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개별소비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상목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‘2024년 2월 29일까지’에서 ‘2024년 4월 30일까지’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중 “2024년 2월 29일”을 “2024년 4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2(탄력세율) ①법 제1조제 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 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의2(탄력세율) ①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 는 물품: 킬로그램당 275원. 다만, <u>2024년 2월 29일까지</u> 는 킬로그램당 176.4원으로 한다.	3. ----- -----. ---- <u>2024년 4월 30일</u> ----- -----.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331